

창원지방법원 2021. 6. 10 선고 2020나6020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, 담당변호사 한상열

피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1. 4. 22.

판 결 선 고 2021. 6. 10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7. 23. 선고 2019가단27405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① 통영시 F 묘지 25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중 선정자 C은 3/9 지분, 선정자 D, E,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각 2/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84. 5. 3. 접수 제6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2016. 7. 4. 접수 제17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“이 법원”을 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”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항소심에서의 당사자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은 ‘피고’로, 피고 C, D, E은 ‘선정자 C, D, E’로 각 고친다)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홍득관, 판사 서민아, 판사 석동우

## 선 정 자 명 단

1. B

2. C

3. D

4. E.

끝.